

인증서, 로고 및 마크사용절차서

(P-17/Rev 0)



0

개정번호

2017-11-01

개정일

ISO 17024:2012 에 따른 최초 제정

제/개정내용

1. 목적

본 절차는 주식회사 피씨에이에이 (이하 인증원 또는 PCAA)의 인증 받은 자격인증 고객들이 인증서, 로고 및 마크의 사용에 있어서 오용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며, 인증원에서 인정마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본 절차는 인증원 및 자격인증고객에 의한 인증 및 인정 마크의 사용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인증마크

자격인증 시스템, 프로세스 혹은 서비스가 관련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마크를 말한다.

3.2 인정마크

특정 시스템, 프로세스 혹은 서비스에 승인된 인증이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마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매뉴얼 7.2항에 따른다.

5. 업무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마크의 사용을 제 3자에게 허가하여서는 안되며, 인증 마크의 사용은 인증원에 의해 제한된다.

5.1 자격 인증서에 대한 준수조건

5.1.1 자격 관리 담당자는 자격인증을 받은 개인에 대해 다음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을 요구한다.

- 자격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 스킴의 관련 조항을 준수한다.
- 자격인증서는 승인을 받은 인증 범위에 대해서만 인증 주장을 한다.
- 당인증원의 평판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당인증원이 승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당인증원에 의해 발행된 인증서의 반납, 정지, 인증취소가 된 경우, 당인증원에 대한 어떠한 언급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
-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5.2 인증마크

5.2.1 관련 자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증된 개인은 본 프로세스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개인의 홈페이지, 명함 및 기타 자격인증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5.3 인정마크

자격인증을 받은 개인은 인정마크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 인증원에 자격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 마크가 포함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 5.3.1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정마크의 색상은 아래에 표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정기관 마크는 오직 “KAB”의 이름과 등록번호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 5.3.2 인증마크는 반드시 인증기관의 마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마크는 인증 마크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언제나 인증 마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KAB 마크는 오직 KAB의 이름과 등록번호와 사용된다.

좌우 배치	상하 배치
	

5.4 인증서 상에 인증 및 인정 마크의 사용

인증/인정 마크들은 본 조항에 기술된 적당한 형식 및 크기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5.4.1 당 인증원은 인증마크의 의미가 혼동되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를 인증서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마크는 한국인정지원센터(KAB)로부터 개인자격인증체제 인증기관으로 인정(인정번호:XXXXXX)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마크입니다.

- 5.4.2 인정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인증마크와 함께 사용시)
 - 개인명함 및 개인자격 인증서, 개인 광고 수단, 개인 홈페이지 등
- 5.4.3 인정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하는 경우
 - 해당자격인증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5.5 마크의 상실 및 철회

- 5.5.1 자격인증 정지 및 취소
 자격인증서의 정지 및 취소에 따라 인증이 유예 및 취소될 경우, 마크의 사용자는 마크 사용권을 상실한다. 이러한 경우, 마크 사용자는 즉시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하

여야 한다.

5.6 변경사항

5.6.1 자격 관리 담당자는 마크 사용 규칙의 변동사항에 대해 마크 사용자에게 즉각 공지한다.

5.7 인증표시의 홍보 및 제한

5.7.1 인증을 받은 자는 문서, 개인광고 등에 자격 인증표시, 인증기관명칭,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획득하였음을 홍보할 수 있다.

5.7.2 자격 관리 담당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인정마크 및 개인자격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5.7.3 자격 관리 담당자는 인정마크의 오용은 인증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광고, 카탈로그 등에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광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7.4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자격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되며, 이러한 경우를 적발하는 때에는 즉시 인증원에 보고한다. 이러한 인증의 표시 이외에도, 인증원은 인증서 등에 부착되는 자체 로고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당국에 기관로고를 등록한다.

6. 기록관리

기록명	보존 년한
F-17-01 자격 인증서 및 카드 양식	5년